

제281회 강서구의의회 임시회
미래·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1. 8. 30.

서울특별시 강서구의의회
미 래 · 복 지 위 원 회

서울특별시 강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1년 8월 30일
전문위원 허 은 옥

1.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2021 - 83
- 나. 발 의 자: 신낙형 의원 외 7명
- 다. 발의일자: 2021년 8월 13일
- 라. 회부일자: 2021년 8월 18일

2. 제안이유

보훈예우수당 지원 기준을 개선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분들을 예우하고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여 나라사랑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 개정내용

- 가.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자의 거주기간 및 나이제한 요건을 삭제
(안 제9조의3제2항)
- 나.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6조제3호, 제9조의2제3항)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나. 예산조치: 2022년 본예산 편성 예정

다. 해당부서: 복지정책과

라. 기 타: 입법예고(2021. 8. 17. ~ 8. 22.) 결과 의견없음

5. 검토의견

가. 개정취지

- 우리구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훈예우수당 의 지급대상을 확대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영예로운 삶을 존중하고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 개정내용

- 보훈예우수당의 지급대상 자격요건을 3개월 이상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65세 이상인 국가보훈대상자에서 거주기간 및 나이제한요건을 삭제하여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로 개정하였으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고
- 부칙규정으로 본 개정조례안의 시행일을 2022년 1월 1일로 하였음

다. 종합의견

- 「국가보훈 기본법」 제 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 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국가보훈사업에 필요한 재원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우리구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시책 중의 하나로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 2021년도 강서구 보훈예우수당 지급 현황

- 지급대상: 2,407명(2021년 7월 기준)

- 대상: 강서구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65세 이상의 국가보훈 대상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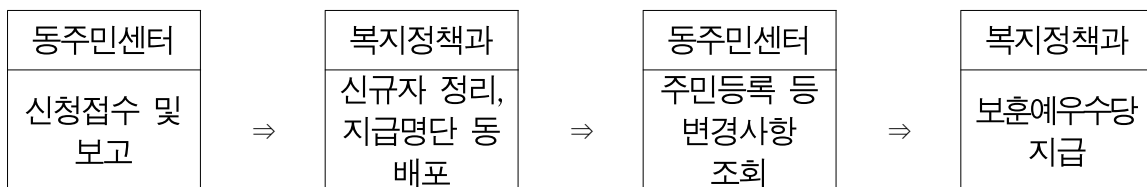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지급제외: 서울시에서 지급하는 서울시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생활보조수당을 지급 받는 사람)

- 지급금액: 월50,000원

- 예산: 1,500,000천원(구비 100%)

- 지급절차



- 현행 조례에서는 보훈예우수당의 지급 기준을 강서구 거주 3개월 이상 및 만 65세 이상으로 제한을 두고 있으며, 이는 강서구 전입시 3개월 동안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고, 만65세가 되지 않은 국가

유공자도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헌에 대한 예우라는 조례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으며,

○ 서울시 자치구별 보훈예우수당 관련 조례 현황을 살펴보면, 보훈예우수당의 지급대상 제외기준을 삭제하거나 지급대상자를 추가하는 등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자를 확대하는 추세이며, 현재 강남구 등 13개 자치구¹⁾에서 거주기간 및 연령제한 없이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고 있어 타 구에서 전입해오는 국가보훈 대상자의 경우 구별로 다른 지급 기준에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있어 왔음.

○ 위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 현행 거주기간 제한 및 지급연령 제한으로 인하여 보훈예우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불평등 해소 및 자긍심이 고취될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나,
-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 확대에 따른 소요예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지급대상 확대에 따른 소요예산 검토

(단위: 천원, 명)

구분	2021년(현재)	2022년(조례개정 시)	비고
예산액	1,440,000	2,100,000	660,000천원 증액
인원수	2,400	3,500	1,100명 증가
월지급액	5만원	5만원	
지급횟수	12회	12회	

1) 강남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노원구, 동대문구, 동작구, 서대문구, 서초구, 송파구, 영등포구, 중구, 중랑구 ※ 5P 자치구별 보훈수당 지급현황 참조

참고**자치구별 보훈수당 현황**

□ 자치구별 보훈수당 지급현황

자치구명	거주기간제한	연령제한	보훈수당액
강서	3개월	만65세이상	5만
강남	없음	없음	8만
강동	3개월	없음	5만
강북	3개월	없음	2만
관악	없음	없음	2만
광진	없음	없음	3만
구로	없음	없음	3만
금천	1년	없음	3만(인상검토중)
노원	없음	없음	1만(인상검토중)
도봉	1년	없음	2만(인상검토중)
동대문	없음	없음	3만
동작	없음	없음	2만(인상검토중)
마포	3개월	없음	3만(인상검토중)
서대문	없음	없음	2만
서초	없음	없음	7만
성동	1년	없음	3만(인상검토중)
성북	3개월	없음	2만(인상검토중)
송파	없음	없음	5만
양천	없음	만65세이상	2만
영등포	없음	없음	3만
용산	1년	만65세이상	5만
은평	3개월	없음	2만
종로	1년	없음	3만
중구	없음	없음	7만
중랑	없음	없음	2만(인상검토중)

□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하여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사업에 필요한 재원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예우 및 지원) ① 국가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의 수준은 전국 가구의 가계 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정부의 시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발전시키며, 제2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한다.